

정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번호: 18/2021/NĐ-CP

하노이, 2021년 03월 11일

시행령

수출세, 수입세법의 일부 조항 및 시행조치를 세부 규정하는 2016/09/01일자 정부의 시행령 제 134/2016/ND-CP호의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

2015년 6월 19일자 정부조직법과 2019년 11월 22일자 정부조직법 및 지방정부조직법의 일부 조항 개정-보완법에 근거하여;

2016년 04월 06일자 수출세, 수입세법에 근거하여;

2014년 06월 23일자 관세청법에 근거하여;

2020년 06월 17일자 투자법에 근거하여;

2019년 06월 13일자 조세관리법에 근거하여;

2017년 06월 12일자 통상관리법에 근거하여;

재무부 장관의 제안에 따라;

정부는 수출세, 수입세법의 일부 조항 및 시행조치를 세부 규정하는 2016/09/01일자 정부의 시행령 제 134/2016/ND-CP호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한 시행령을 발령한다.

제1조. 수출세, 수입세법의 일부 조항 및 시행조치를 세부 규정하는 2016/09/01일자 정부의 시행령 제 134/2016/ND-CP호의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

1. 제3조 1항, 3항은 다음과 함께 개정 및 보완된다:

“제3조. 수출, 수입 물품에 대한 세율적용

1. 베트남 국경관문을 통해 수입, 수출하는 물품, 내수수출품, 내수수입품에 대한 세율은 수출세, 수입세법 제5조, 6조, 7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내수수출품, 내수수입품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동 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3. 내수수출품, 내수수입품에 대한 세율 적용

- a) 내수수출 물품은 우대 수출관세표, 수입관세표, 품목과 절대관세, 복합관세, 관세할당외 수입관세에 관한 2016/09/01일자 시행령 제 122/2016/NĐ-CP호 (이하 시행령 제 122/2016/NĐ-CP호 라고 함), 시행령 제 122/2016/NĐ-CP호의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한 2020/05/25일자 시행령 제 57/2020/NĐ-CP호, 시행령 제 122/2016/NĐ-CP호의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한 시행령 제 125/2017/NĐ-CP호 (이하 시행령 제 57/2020/NĐ-CP호 라고 함)와 (있는 경우) 개정-보완-대체한 각종 문서에 기재한 규정에 따라 수출세율을 적용한다.
- b) (동 항 c호에 규정한 비관세구역에서부터 내수 수입하는 물품 제외) 내수수입 물품은 시행령 제 125/2017/NĐ-CP호, 제 57/2020/NĐ-CP호와 (있는 경우) 개정-보완-대체한 각종 문서에 기재한 규정에 따라 우대 수입세율을 적용한다.
- c) 베트남과의 무역 관계에서 최혜국 대우를 실행하는 국가, 국가 그룹 또는 영토의 원산지 조건을 충족하며 비관세구역에서 국내시장으로 내수수입하는 물품; 특혜수입세율을 향유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비관세구역에서 생산, 가공, 재활용, 조립하며 비관세구역에서 국내시장으로 내수수입하는 물품은 시행령 제 125/2017/NĐ-CP호, 제 57/2020/NĐ-CP호와 (있는 경우) 개정-보완-대체한 각종 문서에 기재한 규정에 따라 우대 수입세율을 적용한다.

베트남과의 무역 관계에서 수입세에 대한 특혜 협정을 맺은 국가, 국가 그룹 또는 영토의 원산지 조건을 충족하며 비관세구역에서 국내시장으로 내수수입할 때 특혜 수입세율을 향유하기 위한 기타 조건을 충족하는 물품; 특혜수입세율을 향유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 비관세구역에서 생산, 가공, 재활용, 조립하며 비관세구역에서 국내시장으로 내수수입하는 물품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국인 국제조약을 수행하기 위해 특혜수입관세표에 대한 정부의 각종 시행령에 규정한 특혜수입세율을 적용한다.

베트남과의 무역 관계에서 최혜국 대우를 실행하는 국가, 국가 그룹 또는 영토의 원산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비관세구역에서 국내시장으로 내수수입할 때 특혜 수입세율을 향유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수입품은 수출세, 수입세법 제 107/2016/QH13 호 5조 3항 c호와 수입품에 대한 일반 세율 적용을 규정한 정부총리의 각종 결정에 기재한 규정에 따라 일반 수입세율을 적용한다.

- d) 관세쿼터를 적용하는 품목에 속한 내수수입 물품은 시행령 제 125/2017/NĐ-CP호, 제 57/2020/NĐ-CP호와 (있는 경우) 개정-보완-대체한 각종 문서에 규정한 관세쿼터 적용하는 물품에 대한 품목 및 수입세율에 대한 규정에 따라 실행한다.”

2. 제5조 3,6,7,8항은 다음과 함께 개정 및 보완된다:

“제5조. 우대 면제권 혜택이 있는 외국 단체, 개인의 물품에 대한 면세

2. 이 시행령에 첨부하여 발행한 부록 I, II, III호에 규정하는 각 품목 외에, 이 조 1항 a, b호에 규정한 대상은 업무수요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타 필요한 각 물품을 면세 수입할 수 있다. 면세 수입물품의 종류 및 정량은 외교부의 확인에 따라 이루어진다.

6. 면세서류:

- a) 면제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세청 법률의 규정에 따른 통관서류;
- b) 이 조 제 8항의 규정에 따른 면세기준 수첩: 면세기준 수첩이 국가 싱글윈도우 정보포털/ National Single - window Information Portal에 업데이트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복사본 1부;
- c) 이 조 제 5항에 규정한 각 경우에 대하여 재수출 또는 폐기 또는 양도하는 것을 이미 완성하였음을 증명하는 증서: 복사본 1부;
- d) 이 조 제 2,3항에 규정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대한 외교부의 확인문서: 복사본 1부;
- đ) 이 조 제 4항에 규정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대한 정부총리의 면세결정: 복사본 1부.

7. 면세수속: 동 시행령 제 3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 a) 이 조 제 2항에 규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외국 단체는 동 시행령에 첨부하여 발행된 부록 VII호 제 02a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발행하여 외교부에 송부한다. 외교부는 신청문서를 수령하는 날로부터 5 근무일 시한 내에 동 시행령에 첨부하여 발행된 부록 VII 제 02b호서식에 따른 확인서 또는 거절문(거절 이유 기재)을 발행한다. 세관기관은 이 조 제 6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근거하여 면세를 수행한다.

b) 이 조 제 3항에 규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외국 단체는 면세 수입되는 물품의 종류 및 정량 확인을 요청하기 위하여 동 시행령에 첨부하여 발행된 부록 VII 제 02c호서식에 따른 문서를 발행하여 외교부에 송부한다. 외교부는 요청서를 수령하는 날로부터 5 근무일 시한 내에 동 시행령에 첨부하여 발행된 부록 VII 제 02d호서식에 따른 확인서 또는 거절문 (거절 이유 기재)을 발행한다. 세관기관은 이 조 제 6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근거하여 면세를 수행한다.

c) 이 조 제 4 항에 규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외국 단체는 동 시행령에 첨부하여 발행한 부록 VII호 제 02e호서식에 따른 문서를 발행하여 재무부에 송부한다. 재무부는 요청서를 수령하는 날로부터 10 근무일 시한 내에 국제조약 또는 베트남 정부와 외국 비정부기구 간의 협상에 따라 수입세 면제받는 물품의 종류 및 정량에 대해 외교부와 함께 합의한다.

재무부는 외교부의 문서를 수령하는 날로부터 10 근무일 시한 내에 정부총리가 면세품의 종류 및 정량을 결정하도록 보고한다. 정부총리는 검토하여 외국 조직, 개인에게 동 시행령에 첨부하여 발행된 부록 VII 제 02g호서식에 따른 수입세 면제 결정서를 발행한다. 세관기관은 이 조 제 6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근거하여 면세를 수행한다.

세관수속을 수행하는 세관기관은 전자적 방식으로 면세기준을 사용하여 수출, 수입 하는 것을 모니터링한다. 전자적 방식으로 면세기준 모니터링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는 대조, 차감하기 위해 면세기준 수첩의 복사본 1부를 제출하며 정본을 제시할 책임을 진다.

8. 면세기준 수첩 발급 또는 면세기준 수첩에 물품 정량 보충의 수속

a) 기관, 단체의 경우, 신청서류:

동 시행령에 첨부하여 발행하는 부록 VII 호 제 01 호서식 또는 01a 호서식에 따른 면세기준 수첩 발급 또는 면세기준 수첩에 물품 정량 보충에 대한 신청서: 정본 01 부;

최초 면세기준 수첩을 발급할 때 베트남에서 대표사무소 설립하는 것에 대한 통지서: 복사본 01 부;

이 조 제 1항 a,b호에 규정하는 대상이 면세기준 수첩에 자동차, 오토바이 정량을 보충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 대하여 재수출 또는 폐기 또는 양도하는

것을 이미 완성하였음을 증명하는 증서: 복사본 1부;

면세품의 종류 및 정량에 대한 세부 규정이 있는 국제조약 또는 베트남 정부와 외국 비정부기구 간의 협상: 복사본 01 부;

국제조약 또는 베트남 정부와 외국 비정부기구 간의 협상이 (동 조 제 1 항 c,d 호에 규정한 대상에게) 면세품의 종류 및 정량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는 경우, 정부총리의 면세 결정서: 복사본 01 부.

b) 개인의 경우, 신청서류:

동 시행령에 첨부하여 발행하는 부록 VII 제 02 호서식 또는 02i 호서식에 따른 면세기준 수첩 발급 또는 면세기준 수첩에 물품 정량 보충에 대한 신청서: 정본 01 부;

동 조 제 1 항 a,b 호에 규정하는 대상의 경우, 외교부에 의하여 발급된 증명서: 복사본 01 부;

이 조 제 1항 a,b호에 규정하는 대상이 면세기준 수첩에 자동차, 오토바이 정량을 보충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 대하여 재수출 또는 폐기 또는 양도하는 것을 이미 완성하였음을 증명하는 증서: 복사본 1부;

(동 조 제 1항 c,d호에 규정하는 대상의 경우) 관할 기관이 국제기구, 비정부 기구에 대해 발급하는 노동허가서 또는 유효한 문서: 복사본 01부;

면세품의 종류 및 정량에 대한 세부 규정이 있는 국제조약 또는 베트남 정부와 외국 비정부기구 간의 협상: 복사본 01 부;

(동 조 제 1 항 c,d 호에 규정한 대상의 경우) 국제조약 또는 베트남 정부와 외국 비정부기구 간의 협상이 면세품의 종류 및 정량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는 경우, 정부총리의 면세 결정서: 복사본 01 부.

c) 면세기준 수첩 발급 또는 면세기준 수첩에 물품 정량 보충의 권한

외교부 국가의전국 또는 외교부로부터 권한위임 받은 기관은 서류를 모두 수령한 날로부터 05 근무일 시한 내에 동 조 제 1 항 a,b 호에 규정하는 단체, 개인에 대해 이 시행령에 첨부하여 발행하는 부록 VII 제 02h1 호서식 또는 02h2 호서식 또는 02h3 호서식에 따른 면세기준 수첩을 발급 수행한다.

동 조 제 1 항 c, d 호에 규정한 기관, 단체의 사무소를 둔 성, 중앙직할 시 세관국 (이하 성 시 세관국이라고 함)은 서류를 모두 수령한 날로부터 05 근무일 시한 내에 동 조 제 1 항 c,d 호에 규정하는 단체, 개인에 대해 이 시행령에 첨부하여 발행하는 부록 VII 제 02h4 호서식 또는 02h5 호서식에 따른 면세기준 수첩을 발급 수행한다.

외교부는 이 시행령이 발효한 시점에 이미 외교부로부터 면세기준 수첩을 발급받은 이 조 제 1 항 c 호에 규정하는 각 면제우대 대상에 대하여 면세기준 수첩을 계속하여 모니터링 및 발급 한다.

이 호에 규정한 면세기준 수첩 발급기관은 면세기준 수첩을 발급한 후 국가 싱글윈도우 정보포털을 통하여 관세총국에 면세기준 수첩의 정보 업데이트를 수행한다.”

3. 제 8 조 2 항 b 호는 다음과 함께 개정 및 보완된다:

“제 8 조. 선물, 기증품에 대한 면세

2. 면세기준:

b) 예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예산으로부터 활동경비를 보장받는 베트남 기관, 단체에 주며 관할기관으로부터 수령 허락되는 외국 단체, 개인의 선물, 기증품; 또는 인도, 자선 목적을 위한 선물, 기증품에 대해서는 해당 선물, 기증품의 전부 가치이며 년 4 회를 초과하지 않는다.”

4. 제 10 조 1 항 g 호, 2, 4, 5 항 는 다음과 함께 개정 및 보완된다:

“제 10 조. 임가공을 위한 수입품, 수출용 임가공 생산물에 대한 면세

1. 임가공 계약서에 따라 수출용 임가공 생산물, 임가공을 위한 수입품은 수출세, 수입세법 제 16 조 6 항에 규정한 수출세, 수입세가 면세되며 (다음)을 포함한다:

g) 임가공 생산물이 임가공을 맡기는 쪽의 지정에 따라 외국으로 수출하는 또는 비관세구역으로 수출하는 또는 베트남에 소재한 단체, 개인에게 내수수출한다.

상품은 수입한 물품으로 다 가공되면 수출용 임가공 생산물은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세 면제를 받는다. 수출용 임가공 생산물이 수출세 부과해야 하는 국내의 원료, 물자로 생산되는 경우는 수출 시 해당 원료, 물자의 세율에 따라 수출생산물에 구성된 국내의 원료, 물자의 금액 분에 대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2. 면세되는 물품 확정을 위한 근거:

a) 납세자가 통상관리법의 일부 조항을 세부 규정하는 2018/05/15 일자 정부의 시행령 제 69/2018/ND-CP 호에 기재한 규정에 따라 임가공 계약서를 맺는다. 납세자가 임가공계약서의 번호 및 부록을 통관신고서 상에 신고한다.

b) 납세가 또는 납세자를 위하여 재임가공 수입받은 단체, 개인은 베트남 영토에서 수출품을 임가공하는 시설물과 해당 시설물에 있는 기계, 장비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지니면서 관세청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임가공

또는 재임가공 시설물, 계약서 및 부록을 세관기관에 통보하는 것도 이행한다. 납세자가 관세청 법률의 규정에 따른 시한 내에 재임가공 시설물 및 계약서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는 규정에 따라 관세분야에 행정위반 처벌을 받는다.

(임가공계약서가 있음) 납세자는 이 항 제 b 호에 기재한 규정에 적합한 재임가공 수입받는 타 단체, 개인이 상품의 공정단계 일부 또는 전부를 임가공한 다음에 반제품을 수령하여 계속 임가공하거나 완제품을 수령하여 수출하도록 이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한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 또는 수입한 물품으로 임가공된 반제품을 맡기는 경우 납세자가 재임가공되는 수입품에 대해 수입세가 면제된다.

c) (임가공계약서가 있음) 납세자는 타 단체, 개인이 비관세구역 또는 외국에서 임가공하도록 수입한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 또는 수입한 물품으로 임가공된 반제품을 맡기는 경우 재임가공된 수입품, 반제품은 수출세가 면제된다. 외국에서 임가공한 상품은 베트남으로 다시 수입하면 동 시행령 제 11 조 1 항 d 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비관세구역에서 임가공한 상품은 베트남으로 다시 수입하면 동 시행령 제 22 조 2 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d) (임가공계약서가 있음) 납세자는 관세청 법률의 규정에 따라 면세된 수입품 사용 상황을 결산 시행하도록 책임을 진다.

đ) 외국 또는 비관세구역으로 수출한 상품을 임가공하기 위해 사용되어 수입세 면제받은 수입품의 수량은 수출한 상품을 임가공하기 위하여 사용된 실제 수입 상품의 수량이다.

국내 (비관세구역 내에 소재하지 않음) 의 개인, 단체에 내수수출한 상품을 가공하기 위해 사용되어 수입세 면제받은 수입품, 내수수입 임가공 상품은 이 항 g, h 호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e) 임가공을 위한 수입품, 가공하여 임가공 계약한 외국측에게 수출 과정에서 구성된 스크랩은 수입세, 수출세가 면제된다.

임가공을 위한 수입품, 임가공한 상품,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은 관세청법의 규정에 따라 폐기 가능하고 이미 실제 폐기되면 수입세가 면제된다.

이 시행령 제 8 조에 기재한 규정에 따라 선물, 증정품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 가공을 위해 수입한 물품에 대해 상품이 수출되지 않거나 초과 수입품이 수출되지 않은 경우 납세자는 새로운 세관신고서를 등록해야 하고 당시 수입품의 세율 및 과세가격에 따라 세관당국에 남세신고를 해야 한다.

g) 내수수출 물품을 임가공하기 위해 사용되어 수입세가 면제되는 수입품 수량은 내수수출자가 이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 VII호 제 22호서식에 따라 내수수출물품을 통관한 날로부터 15일 기한 이내에 수입수속이 완성된 해당 내수수입물품의 세관신고서에 관한 정보를 세관당국에 통보하면 이미 내수수출된 상품을 임가공하기 위하여 실제로 사용되는 물품 수량이다.

상기 기한이 경과한 가운데 내수수출자가 수입절차를 마친 해당 내수 수입품의 세관 신고서에 관한 정보를 세관당국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내수 수출자는 신규 세관신고서를 등록하여야 하여 당시의 규정에 따라 수입품의 세율 및 과세가격에 따라 내수수출품을 임가공하기 위하여 사용한 수입품에 대해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납세 후 내수수출자가 수입수속을 마친 해당 내수수입물품의 세관신고서에 관한 정보를 세관 당국에 통보하면 과다 납부된 세금을 처리함에 대한 조세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세금이 처리된다.

h) 가공 수입 유형에 따라 세관신고서가 등록된 내수 수입품은 내수 수입자가 이 항 제 a, b호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수입세가 면제된다. 내수 수입품이 다른 유형으로 등록된 경우, 내수 수입자는 당시 내수수입물품의 세율 및 과세가격에 따라 납세신고를 한다.

내수 수입자가 생산 및 경영을 하기 위해 물품 수입세를 납부하였고 내수수입된 물품을 수출품 생산에 투입하였으며 실제로 상품을 해외 또는 비과세구역으로 이미 수출한 경우, 납부한 수입세는 동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환급된다.

4.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 및 폐품은 국내 판매하는 때 수입세가 면제되며, 납세자가 세관수속을 수행할 필요가 없으나, 조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에 (있다면) 부가가치세, 특별 소비세, 환경보호세를 납세신고 하여야 한다.

5. 면세 서류 및 수속은 이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동 조에 규정한 물품에 대한 내수수출 절차를 수행할 때 이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면세 서류 외에 내수수출자는 베트남에서 납품하는 것에 관한 해외 단체 또는 개인의 지정 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복사본 01부.”

5. 제 11 조 1 항 a 호는 다음과 함께 개정 및 보완된다:

“제 11 조. 임가공을 위한 수출물품, 수입 임가공 생산물에 대한 면세

1. 가공계약에 따른 임가공을 위한 수출물품, 수입 임가공 생산물은 수출세, 수입세법 제 16 조 6 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세, 수입세가 면세되, (다음은) 포함한다:

- a) 수출 원료, 물자, 구성품.

수출한 원료, 물자, 구성품의 가액 또는 수량은 다시 반입하는 수입이 없는 임가공 생산물에 상응하여 수출 원료, 물자, 구성품의 세율 수준에 따라 수출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수출물품이 생산물 구성가격의 51% 이상을 점하는 에너지비용과 합하여 (천연) 자원, 광산물의 총 가액을 이루는 (천연) 자원, 광산물, 생산물이면서 수출세 과세대상에 속하는 임가공을 위한 (수입한 물품으로부터 수출 임가공,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 제외) 수출물품인 경우, 수출세가 면세되지 않는다.

생산물 구성가격의 51% 이상을 점하는 에너지비용과 합하여 (천연) 자원, 광산물의 총 가액을 이루는 생산물임을 확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및 조세관리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완 하는 법률의 일부 조항을 세부 규정하고 시행 안내하는 2016/07/01 일자 정부의 시행령 제 100/2016/NĐ-CP 호, 시행령 제 100/2016/NĐ-CP 호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완 하는 2017/12/15 일자 정부의 시행령 제 146/2017/NĐ-CP 호에 기재한 규정에 따라 실행한다.”

6. 제 12 조는 다음과 함께 개정 및 보완된다:

“제 12 조. 수출품 생산을 위한 수입품에 대한 면세

1. 수출품 생산을 위한 수입품은 수출세, 수입세법 제 16 조 7 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세가 면세되며 다음을 포함한다:

- a) 수출 생산물을 직접 구성하거나 수출품 생산 과정에 직접 참여하나 물품으로 직접 변환되지는 않는, 수입한 원료, (수출품을 포장하기 위한 포장재를 만들기 위한 물자 또는 포장재 모두를 포함하는) 물자, 구성품, 반제품;

- b) 포장하며 라벨을 부착하는 또는 수출 생산물에 부착, 조립하는 또는 수출 생산물과 세트 품목으로 함께 포장하기 위해 수입한 완성 생산물;

- c) 수출 생산물을 보증하기 위하여 수입한 구성품, 부품;

- d) 매매, 교환, 소비를 위해 사용되지 않고 견본으로써 사용되는 수입물품;

- đ) 베트남에서 폐기 가능하며 실제로 미리 폐기된 수출 생산을 위한 수입품.

2. 면세되는 물품 확정을 위한 근거:

- a) 납세자가 베트남 영토 내에 수출품을 생산하는 시설, 생산시설에 있는 기계, 설비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 납세자가 관세청법의 규정에 따라 관세기관에 생산시설, 납세자의 생산시설에 있는 기계, 설비에 대해 통보를 수행하며 재임가공 수입받는 자의 임가공 생산시설, 재임가공 계약서를 통보한다. 납세자가 관세청법의 규정에 따른 시한이 경과한 가운데 재임가공 생산시설, 재임가공 계약서를 통보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관세 분야의 행정위반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는다.

납세자는 생산시설과 생산시설에 있는 기계, 설비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가져 있는 다른 단체나 개인이 재임가공하기 위하여 이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한 물품을 다음의 경우에 인도한다:

- a1) 납세자가 베트남 영토 내에 다른 단체, 개인이 상품의 하나 또는 일부의 공정을 생산, 재임가공하기 위하여 수입한 물품의 하나 또는 전부를 인도한 다음에 반제품을 수령하여 수출품을 계속적으로 생산하면 생산, 재임가공 위탁된 수입품에 대한 수입세가 면제된다.
- a2) 납세자가 베트남 영토 내에 다른 단체, 개인이 상품의 하나 또는 일부의 공정을 생산, 재임가공하기 위하여 납세자에 의해 수입한 물품으로 생산된 반제품의 하나 또는 전부를 인도한 다음에 반제품을 수령하여 수출품을 계속적으로 생산하는 또는 완제품을 수령하여 수출하면 반제품을 생산하여 생산, 재임가공 위탁된 수입한 물품에 대한 수입세가 면제된다.
- a3) 납세자가 베트남 영토 내에 다른 단체, 개인이 상품의 모든 공정을 생산, 재임가공하기 위하여 수입한 물품의 하나 또는 전부를 인도한 다음에 완제품을 수령하여 수출하면 생산, 재임가공 위탁된 수입품에 대한 수입세가 면제된다.
- a4) 납세자가 이 항 a.1, a.2, a.3 호에 규정한 경우 중 하나에 따라 비과세구역 또는 해외에서 다른 단체, 개인이 생산, 재임가공하기 위하여 전부의 수입품으로 생산된 수입품, 반제품을 인도하면 전부의 수입품으로 생산되어 생산, 재임가공 위탁된 수입품, 반제품에 대한 수출세가 면제된다. 해외에서 생산, 재임가공 위탁된 물품이 베트남으로 다시 수입하면 이 시행령 제 11 조 1 항 d 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세를 부담해야 한다. 비과세구역에서 생산, 재임가공 위탁된 물품이 베트남으로 다시 수입하면 이 시행령 제 22 조 2 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세를 부담해야 한다.
- b) 이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 수입세를 납부한 자는 납세자의 정관자본금 또는 보통주 총수 (total number of ordinary shares)의

50%이상을 소지하는 단체가 상품을 생산, 가공하도록 모든 수입한 물품을 인도한 다음에 상품을 다시 수령하여 수출하면 생산 및 가공 위탁된 수입품 (생산 수입받은 단체는 다른 단체가 수출품의 공정 하나 또는 일부를 생산, 재임가공하도록 위탁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한 수입세가 면제된다. 상품 생산 및 가공을 수입받은 단체는 베트남 영토내에 생산시설과 생산시설에 있는 기계, 설비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납세자가 관세청법의 규정에 따라 관세기관에 생산시설, 납세자의 생산시설에 있는 기계, 설비에 대해 통보를 수행하며 재임가공 수입받는 자의 임가공 생산시설, 재임가공 계약서를 통보한다. 납세자가 관세청법의 규정에 따른 시한이 경과한 가운데 재임가공 생산시설, 재임가공 계약서를 통보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관세 분야의 행정위반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는다.

납세자가 재임가공 수입받은 단체의 생산시설 통보 시점에 세관당국에 다음의 각종 증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생산 수입받은 단체 및 납세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가장 최근에 회계감사된 재무제표: 공증받은 복사본 01 부;

생산 수입받은 단체 및 납세자의 운영조직에 관한 정관: 공증받은 복사본 01 부;

생산 수입받은 단체 및 납세자의 주식회사에 대한 기업의 주주명부 또는 2 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구성원 등록: 공증받은 복사본 01 부;

납세자는 다른 단체가 비과세구역 또는 해외에서 생산, 재임가공을 수입하기 위해 전부의 수입한 물품을 인도하면 해당 물품에 대한 수출세가 면제된다. 해외에서 생산, 재임가공된 물품은 베트남으로 다시 수입하면 동 시행령 제 11 조 1 항 d 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세를 납부해야 한다. 비과세구역에서 생산, 재임가공된 물품은 베트남으로 다시 수입하면 동 시행령 제 22 조 2 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세를 납부해야 한다.

c) 납세자가 관세청법의 규정에 따라 면세된 물품을 사용하는 현황을 결산 수행할 책임을 진다.

d) 해외 또는 비과세구역으로 수출하는 물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되어 면세된 수입품 수량은 이미 수출한 물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된 실제 수입품 수량이다.

(비과세구역 제외) 국내의 단체, 개인에 이미 내수수출한 물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된 수입물품, 내수수출품, 내수수입품은 이 항 제 e, g, h 호의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 ㄸ) 생산을 위한 수입품, 생산 상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고 폐기 가능하며 관세청법의 규정에 따라 실제로 미리 폐기된 스크랩 및 폐물은 수입세가 면제된다.

이 시행령 제 8 조에 기재한 규정에 따라 선물, 증정품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 생산을 위해 수입한 물품이 사용되지 않거나 생산을 위해 사용된 수입품인데 상품을 수출하지 않은 경우 수입세가 면제되지 않으며 납세자가 신규 세관신고서를 등록해야 하여 당시 수입품의 세율 및 과세가격에 따라 세관당국에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 e) 내수수출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어 수입세가 면제되는 수입품 수량은 내수수출자가 이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 VII호 제 22호서식에 따라 내수수출품을 통관한 날로부터 15일 기한 이내에 수입수속이 완성된 해당 내수수입물품의 세관신고서에 관한 정보를 세관당국에 통보하면 이미 내수수출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사용되는 물품 수량이다.

상기 기한이 경과하는 가운데 내수수출자가 수입절차를 마친 해당 내수 수입품의 세관 신고서에 관한 정보를 세관당국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내수 수출자는 신규 세관신고서를 등록하여야 하며 당시의 규정에 따라 수입품의 세율 및 과세가격에 따라 내수수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한 수입품에 대해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납세 후 내수수출자가 수입수속을 마친 해당 내수수입품의 세관신고서에 관한 정보를 세관당국에 통보하면 과다 납부된 세금을 처리함에 대한 조세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세금이 처리된다.

- g) 내수수출품은 수출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내수수출자가 내수수출세관신고서를 등록하여 당시의 규정에 따라 내수수출품의 세율 및 과세가격에 따라 납세신고를 한다.
- h) 가공 수입 유형에 따라 세관신고서가 등록된 내수 수입품은 내수 수입자가 이 시행령 제10조 2항 제 a, b호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수입세가 면제된다. 내수 수입품이 다른 유형으로 등록된 경우, 내수 수입자는 당시 내수 수입물품의 세율 및 과세가격에 따라 납세신고를 한다.

내수 수입자가 생산 및 경영을 하기 위해 물품 수입세를 납부했고 내수수입한 물품을 수출품 생산에 투입했으며 실제로 상품을 해외 또는 비과세구역으로 이미 수출한 경우, 납부한 수입세는 동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환급된다.

3. 면세 서류, 수속은 이 시행령 제 31 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동 조에 규정한 물품에 대한 내수수출 절차를 수행할 때 이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면세서류 외에 내수수출자는 베트남에서 납품하는 것에 관한 해외 단체 또는 개인의 지정 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복사본 01부.

4. 수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 및 폐품은 국내 판매하는 때 수입세가 면제 되며, 납세자가 세관수속을 수행할 필요가 없으나, 조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에 (있다면) 부가가치세, 특별 소비세, 환경보호세를 납세신고 하여야 한다.”

7. 제 14 조 4 항, 6 항은 다음과 함께 개정 및 보완된다:

“제 14 조. 투자우대 혜택을 받는 대상의 고정자산 형성을 위한 수입품에 대한 면세

4. 국내에서 아직 생산할 수 없는 건설물자를 확정하기 위한 근거는 계획투자부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투자 프로젝트의 생산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술라인 내 전용 운송수단을 확정하기 위한 근거는 과학기술부의 면세된 수입품 확정을 위한 목록이나 기준 또는 투자 프로젝트의 생산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술라인 내 전용 운송수단에 대한 과학기술부의 확인서에 따라 이루어진다.

6. 면세되는 대상 확정근거

a) 투자우대 업종 또는 특별 투자우대 업종에 속한 투자사업; 사회 경제적 조건이 어려운 지역 또는 사회 경제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투자사업: 투자법의 일부 조항을 세부 규정하고 시행 안내하는 2015/11/12 일자 시행령 제 118/2015/NĐ-CP 호 (이하 “시행령 제 118/2015/NĐ-CP 호”라고 함)에 첨부하여 발행된 부록 I, 부록 II 호의 규정과 (있는 경우) 개정, 보완, 대체한 각종 문서에 따라 수행한다.

b) 투자자본이 6 조 동 이상이고 투자등록증명서 발급 또는 투자정책승인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최소 6 조 동을 지출하며 동시에 다음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 투자사업: 투자법 제 61 / 2020 / QH14 호 제 15 조 2 항 c 호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최소한 총 수익금이 수익을 얻은 연도 이후 최대 3 년 이내에 연간 10 조 동 또는 3,000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면 사업투자 소유자의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이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세가 면제된다.

면제 목록을 접수한 세관당국은 사후검사 절차, 수속에 따라 사업 소유자의 회사에서 투자자본금 지출, 총 매출액 및 노동자 고용에 대한 기준을 검사할 책임을 진다. 투자등록증명서 발급 또는 투자정책승인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최소 6 조 동을 지출하지 않은 또는 투자정책승인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최소 6 조 동을 지출했으나 투자법률의 규정에 따른 총 매출액이나 노동자 고용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투자사업이라면 납세자가 이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세가 면세되지 않고 세무관리법률의 규정에 따라 면제된 세금과 연체이자를 충분히 납세신고해야 한다.

- d) 농촌 지역에서 500 명 이상을 사용하는 투자 프로젝트 (규정에 따른 근무시간보다 적은 근무시간에 근로자 및 12 개월 미만의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자): 투자 프로젝트의 근로자 수를 정하는 시점은 사업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날로부터 12 개월 후로 산정된다. 투자자는 이 시행령과 함께 발행된 제 VII 부록의 21 번 양식에 따라 프로젝트의 사업이 공식적으로 시작될 날짜를 신고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며 세관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500 명 이상을 사용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은 공식적으로 시작된 후 면세 목록을 받는 세관당국은 투자 프로젝트의 근로자 수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

투자 프로젝트의 근로자 수의 기준을 정하는 시점에 500 명 미만의 근로자 수를 사용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이 조 제 1 항 규정에 따른 수입세 우대를 받을 수 없다. 납세자는 세관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면제된 금액과 연체이자를 신고하며 충분히 납부해야 한다.

농촌 지역이면서 동시에 농촌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500 명 이상의 근로자 수를 사용하는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농촌 지역에 있는 작업 및 항목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수 (농촌 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는 작업 및 항목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수 제외)에 근거하여 산정된다.

- d) 하이테크 기업, 과학기술기업, 과학기술기구는 하이테크에 대한 법률 및 과학기술에 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 d) 투자법 제 61/2020/QH14 호에 규정한 타 투자우대 대상의 면세 확정 근거는 투자법률 및 관련 전문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 e) 이 조 제 1 항에 규정한 수입세 우대는 투자법 제 61/2020/QH14 호 15 조 5 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 사업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다.”

8. 제 15 조 1 항은 다음과 함께 개정 및 보완된다:

“제 15 조. 5 년 시한 동안 원료, 물자, 구성품에 대한 수입세 면제

1.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을 위하여 수입된 이 항 제 a, b, c 호에 규정한 투자사업의 원료, 물자, 구성품은 수출세, 수입세법 제 16 조 13 항의 규정에 따라 생산을 시작한 날로부터 05 년 이내에 수입세가 면제된다.

- a) 시행령 118/2015/NĐ-CP 호 부록 I 호와 (있는 경우) 개정, 보완, 대체한 문서에 규정한 특별 투자우대 업종 목록에 속한 투자사업.
- b) 시행령 118/2015/NĐ-CP 호 부록 II 호와 (있는 경우) 개정, 보완, 대체한 문서에 규정한 사회 경제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 목록에 속한 투자사업 또는 시행령 118/2015/NĐ-CP 호 제 16 조 2 항 a,c 호와 (있는 경우) 개정, 보완, 대체한 문서에 규정한 투자사업.
- c) 하이테크에 대한 법률과 과학기술에 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하이테크 기업, 과학기술 기업, 과학기술 기구의 투자사업.

생산 시작 시간은 시험 생산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공식 생산 시간이다. 납세자는 실제 제조 일자를 신고하고 책임을 지며, 면세품 목록 통보서류를 접수하는 세관에 세관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통보해야 한다.

5 년의 면세 기간이 끝나면 납세자가 면세되었으나 소진되지 않은 수입 원료, 물자, 구성품의 수량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세금을 충분히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

9. 제 28 조 1 항, 5 항, 7 항, 8 항, 9 항은 다음과 함께 개정-보완된다:

“제 28 조. 사회안녕 보장, 천재, 참사, 전염병의 후과 극복, 기타 각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품, 수입품에 대한 면세

1. 사회안녕 보장, 천재, 참사, 전염병의 후과 극복, 기타 각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품, 수입품은 수출세, 수입세법 제 16 조 23 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세, 수입세가 면제되며 다음을 포함한다:
 - a)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사회안녕보장 프로그램에 속한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할 필요가 있는 물품은 수입세가 면제된다;
 - b)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천재, 참사, 전염병의 후과를 극복하기 위해 수입된 물품은 수입세가 면제된다;
 - c) *Aquilaria crassna* 나무로부터 생산된 침향과 인공사육 (Captive breeding) 에서 유래한 비단뱀 물품은 수출세가 면제된다;
 - d) 이 시행령에 첨부하여 발행한 부록 VIII호에 규정한 목록에 속하며 베트남 기업, 가구, 가족기업, 개인의 투자지원을 받고 베트남과 접경하는 캄보디아의 각 성에서 재배되고 국내에서 물품생산용 원료로써 사용되기 위하여 세관 활동 구역에 속한 국경관문을 통하여 수입된 미가공 농산물은 수입세가 면제된다.

베트남과 접경하지 않는 캄보디아의 각 성에서 물품을 재구매만 하는 또는 투자만 하는 경우, 이 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d) 기타 특별한 각 경우에 있어서의 수출물품, 수입물품은 재무부의 건의를 바탕으로 총리의 결정에 따라 각 구체적인 경우별로 수입세,수출세가 면제된다.

5. 기타 특별한 각 경우에 있어서의 수출물품, 수입물품에 대한 면세신청서류는 다음을 포함한다:

a) 면세신청하는 이유, 물품의 수량, 종류, 가치, 세액을 명시한 부처, 장관급 기관, 성 시 인민위원회, 또는 단체, 개인의 수출세, 수입세 면제 요청공문: 원본 01 부;

b) 이 시행령 에 첨부하여 발행한 부록 VII 호 제 04 호서식에 따른 수출세, 수입세 면제 신청한 수출물품, 수입물품 목록: 원본 01 부.

7. 사회안녕 보장, 천재, 참사, 전염병의 후과 극복, 기타 각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품, 수입품에 대한 면세 수속:

납세자가 이 조 3, 4, 5 항의 규정에 따라 재무부에 면세신청서류를 제출한다. 면세신청서류를 충분히 수령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재무부는 해당 서류를 심사평가 하여 총리가 결정하도록 면세신청물품 목록을 첨부하여 보고한다. 유관 부처들의 의견이 필요한 기타 특별한 경우에 대하여는, 서류 심사평가 시간이 연장할 수 있되 면세신청서류를 충분히 수령한 날로부터 40 일 시한을 초과하지 않는다. 재무부의 심사평가문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총리는 이 시행령에 첨부하여 발행한 부록 VII 호 제 23 호서식에 따른 수출세, 수입세 면제 결정을 내리거나 면세신청 반대 문서를 발행하여 면세를 신청한 기관, 단체, 개인에 송부한다.

총리의 면세결정에 근거하여 물품 수출, 수입 수속을 수행하는 세관당국은 수출세, 수입세 면제를 실행하다.

8. *Aquilaria crassna* 나무로부터 생산된 침향과 인공사육 (Captive breeding) 에서 유래한 비단뱀 물품에 대한 수출세 면제 서류 및 수속:

면세 서류 및 수속은 이 시행령 제 31 조의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인공사육 (Captive breeding) 에서 유래한 비단뱀 물품에 대하여는 세납자가 다음의 증서를 추가로 제출한다:

a) 지역 산림국이나 농업 및 농촌개발부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으로부터 발급된 야생동물 사육장 등록 증명서: 복사본 01 부, 최초 수출 시 대조하기 위하여 원본을 제시한다;

b) 도살된 비단뱀 수가 인공사육 (Captive breeding) 에서 유래하는 것을 인증함에 대하여 수출수속을 수행할 때마다의 지역산림국의 인증서: 복사본 01 부, 대조하기 위하여 원본을 제시한다;

9. 베트남 측의 투자지원을 받고 캄보디아에서 재배되어 국내로 수입된 미가공 농산물에 대한 면세 수속:

a) 매년, 납세자가 캄보디아와 접경하는 성 세관국에 전자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면세 수입물품 목록을 통보한다. 면세 목록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 납세자가 이 시행령 제 30 조의 규정에 따라 캄보디아와 접경하는 성 세관국에 통지한다.

이 시행령 제 30 조 3 항에 기재한 규정에 따른 면세 수입물품 목록에 관한 통보서류외에도 기업인 납세자가 다음의 증서를 추가 제출한다:

베트남 기업이 투자하는 캄보디아의 관할당국으로부터 발급된 투자허가증명서: 복사본 01 부와 기업의 인증 도장이 찍힌 베트남어 번역본 01 부;

농산물 투자, 재배 및 수령을 지원함에 대한 캄보디아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합의서, 그 중 각 분야의 금액, 상품, 수량, 유형 및 가치를 명시한다: 복사본 01 부, 대조하기 위하여 원본을 제시한다;

(있는 경우) 베트남과 접경하는 캄보디아의 각 성에서 농산물을 투자 및 재배 지원함에 관련된 증서: 복사본 01 부, 최초 수출 시 대조하기 위하여 원본을 제시한다;

b) 세관기관에 이미 통보한 면세 수입물품 목록을 바탕으로, 납세자가 이 시행령 제 31 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면세수속을 수행한다.

세관당국은 각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세 면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가구, 가족기업,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성급 인민위원회로부터 매년 발표되는 면세 리스트 통보서류, 베트남과 접경하는 캄보디아의 각 성에서 농산물을 투자 및 재배 지원하는 가구, 가족기업, 개인의 리스트에 근거하여 실제 수입한 물품을 검사하면서 대조한다.

베트남- 캄보디아 간의 국경에 접해 있는 각 성의 인민위원회는 이 시행령에 첨부하여 발행한 부록 제 VII 호 제 11 호서식에 따라 베트남과 접경하는 캄보디아의 각 성에서 농산물 투자 및 재배에 관한 활동이 있는 각 성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가족기업, 개인 리스트를 매년 성 인민위원회 포털 사이트에다 발표한다; 동시에 성 세관국 그리고 캄보디아와 접경하는

각 성에 속한 국경관문관리 세관지국에 송부한다. 이미 발표한 각종 문서에 기재한 기준에 관한 변경이 있으면 적합한 신규 문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10. 제 28a 조는 다음과 함께 보충된다:

“제 28a 조. 비관세구역인 EPE 에 대한 세관 검사, 감시의 조건과 세무정책 적용

1. 비관세구역인 EPE 에 대한 세관 검사, 감시의 조건은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a) 외부 영역과 분리된 단단한 울타리가 있다; 게이트/ 문만 통해 수출가공기업에 물품을 진입 및 반출 하는 것을 보장하는 출입 게이트/ 문이 있다.

b) 하루 종일 (24 / 24 시간, 공휴일, 휴일 포함) 출입문 및 물품보관의 위치를 감시하는 카메라 시스템을 소유한다; 카메라 데이터는 비즈니스를 관리하는 세관에 온라인으로 연결되며 최소 12 개월 간 수출가공기업에서 보관된다.

관세총국장은 이 항 제 b 호에 기재한 규정을 실행하기 위하여 감시 카메라 시스템에 관하여 기업과 세관기관 간 교환하는 데이터 메시지 형식을 발행할 책임이 있다.

c) 관세청법의 규정에 따라 수입품 사용 현황에 대한 수입, 수출 및 재고의 결산을 보고하기 위해 수출가공기업의 비과세 대상에 속한 수입품 관리 소프트웨어가 있다.

2. 수출가공기업 그리고 수출가공기업 등록을 위한 투자사업을 구현하는 투자자에 대한 세관 검사 및 감독 조건 충족 가능성에 관한 검사 및 인증 절차.

a) 투자자는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등록 증명서 또는 투자등록 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관할 투자등록기관의 확인서를 신청하는 경우:

투자자는 투자등록기관에 이 시행령에 첨부하여 발행한 부록 VII 호 제 24 호서식에 따라 이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세관 검사 및 감독 조건 충족 신고서를 투자등록 증명서 또는 투자등록 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관할 투자등록기관의 확인서를 신청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투자등록기관은 공업단지 및 경제구역 관리에 관하여 규정한 2018/05/22 일자 시행령 제 82/2018/NĐ-CP 호 (이하 “시행령 제 82/2018/NĐ-CP 호”라고 함) 제 30 조 1 항에 기재한 규정, (있는 경우) 개정, 보충, 대체 문서와 이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세관 검사 및 감독 조건 충족 가능성에 관한 관할세관기관의 의견을 수집하기 위한 문서를 투자등록 증명서 또는 투자등록 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관할 투자등록기관의 확인서를 신청하는 서류 (복사본)와 기업의 신고서서 (원본 01 부)와 함께 송부한다.

투자등록기관의 문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근무 03 일 이내에, 투자등록 증명서 또는 투자등록 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관할 투자등록기관의 확인서를 신청하는 서류와 기업의 신고서에 근거하여, 세관당국은 이 시행령에 첨부하여 발행한 부록 VII 호 제 24 호 서식상 기업의 신고서에 따른 세관 검사 및 감독 조건 충족 가능성에 관해 인증하여 투자등록기관에 송부한다.

- b) 투자자가 확장투자프로젝트를 구현하기 위하여 (있는 경우) 투자등록 증명서 또는 투자등록 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관할 투자등록기관의 확인서를 발급 또는 변경 신청하는 경우:

투자자는 확장투자프로젝트에 대하여 이 시행령에 첨부하여 발행한 부록 VII 호 제 24 호서식에 따라 이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세관 검사 및 감독 조건 충족 가능성에 대한 신고서 01 부를 투자등록 증명서 또는 투자등록 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관할 투자등록기관의 확인서를 발급 또는 변경 신청하는 서류와 함께 투자등록기관에 제출한다.

투자등록기관은 확장투자프로젝트에 대하여 시행령 제 82/2018/NĐ-CP 호 제 30 조 1 항에 기재한 규정, (있는 경우) 개정, 보충, 대체 문서와 이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세관 검사 및 감독 조건 충족 가능성에 관한 관할세관기관의 의견을 수집하기 위한 문서를 투자등록 증명서 또는 투자등록 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관할 투자등록기관의 확인서를 신청하는 서류 (복사본)와 기업의 신고서 (원본 01 부)와 함께 송부한다.

투자등록기관의 문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근무 03 일 이내에, 투자등록 증명서 또는 투자등록 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관할 투자등록기관의 확인서를 신청하는 서류와 기업의 신고서에 근거하여, 세관당국은 이 시행령에 첨부하여 발행한 부록 VII 호 제 24 호 서식상 기업의 신고서에 따른 세관 검사 및 감독 조건 충족 가능성에 관해 인증하여 투자등록기관에 송부한다.

- c) EPE 가 아닌 기업에서 EPE 로 전환 등록하는 경우:

투자자의 제안에 근거하여, 투자등록기관은 시행령 제 82/2018/NĐ-CP 호 제 30 조 1 항에 기재한 규정, (있는 경우) 개정, 보충, 대체 문서와 이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세관 검사 및 감독 조건 충족 가능성에 관한 관할세관기관의 의견을 수집하기 위한 문서를 송부한다.

투자등록기관의 문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근무 10 일 이내에, 세관기관은 이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세관 검사 및 감독 조건을 실제검사하고 이

시행령에 첨부하여 발행한 부록 VII 호 제 26 호서식에 따른 세관 검사 및 감독 조건을 충족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문서를 투자등록기관에 송부할 책임이 있다.

3. 투자사업 (신규 투자사업 및 확장 투자사업 포함)을 구현하는 투자자는 투자등록 증명서, 변경 투자등록 증명서 또는 투자등록 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관할 투자등록기관의 문서에 기재한 EPE 이 된 시점부터 수출세, 수입세법의 규정에 따른 비관세구역에 대한 세무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

비관세구역에 대한 세무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세관 검사 및 감독 조건을 실제 검사하는 것은 이 조 제 4,5,6 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4. EPE (신규 투자사업 및 확장 투자사업을 하는 기업 포함)에 대한 세관 검사 및 감독 조건에 관한 실제 검사

- a) 수출가공기업이 투자등록 증명서, 변경 투자등록 증명서 또는 투자등록 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관할 투자등록기관의 문서 또는 수출가공기업이 공식적으로 영업을 시작한 시점이 상기 문서에 기재한 시점보다 이후라는 투자등록기관의 확인서에 명시된대로 공식적으로 영업을 시작하기 전의 30 일 이내, 수출가공기업은 수출가공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세관지국에 이 시행령에 첨부하여 발행한 부록 VII 호 제 25 호서식에 따라 세관 검사 및 감독 조건을 충족했다는 통지를 송부하여야 한다.

투자등록 증명서, 변경이 있는 투자등록 증명서 또는 투자등록 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관할 투자등록기관의 문서가 수출가공기업이 공식적으로 영업을 시작한 시점을 언급하지 않은 경우는 수출가공기업이 공식적으로 영업을 시작한 시점이 해당 기업이 세관당국에 기업의 통지대로 공식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 b) 수출가공기업의 통보를 수령한 날로부터 근무 10 일 이내, 수출가공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세관지국은 이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세관 검사 및 감독 조건 충족 가능성에 관한 검사를 완료하여 이 조 제 1 항에 규정한 세관 검사 및 감독 조건을 충족하는지 아닌지에 대하여 이 시행령에 첨부하여 발행한 부록 VII 호 제 26 호서식에 따른 확인문서를 수출가공기업에 송부한다. 수출가공기업이 세관 검사 및 감독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확인문서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기업이 이 조 제 1 항에 규정한 세관 검사 및 감독 조건을 계속해서 보완할 수 있되 수출가공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세관지국이 최초 확인문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01 년이 경과해서는 안 된다.

- c) 수출가공기업이 이 조 제 1 항에 규정한 세관 검사 및 감독 조건을 계속해서 보완했을 때 해당 기업은 수출가공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세관지국에 이

시행령에 첨부하여 발행한 부록 VII 호 제 25 호서식에 따른 문서를 송부하며 수출가공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세관지국이 이 조 제 1 항에 규정한 세관 검사 및 감독 조건을 재검사하도록 요청한다. 수출가공기업의 신청문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근무 10 일 이내, 수출가공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세관지국은 세관 검사 및 감독 조건 충족 가능성에 관한 재검사를 완료하여 이 조 제 1 항에 규정한 세관 검사 및 감독 조건을 충족하는지 아닌지에 대하여 이 시행령에 첨부하여 발행한 부록 VII 호 제 26 호서식에 따른 문서를 수출가공기업에 송부할 책임이 있다.

수출가공기업이 이 조 제 1 항에 규정한 세관 검사 및 감독 조건을 여러 번 보완할 수 있되 수출가공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세관지국이 최초 확인문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01 년이 경과해서는 안 된다.

- d) 세관지국이 최초 확인문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01 년이 경과한 가운데 수출가공기업이 수출가공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세관지국에 통보하지 않거나 이 조 제 1 항에 규정한 세관 검사 및 감독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비관세구역에 대한 세무정책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기업은 이 조 제 1 항에 규정한 세관 검사 및 감독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신규 투자사업 또는 확장투자사업에 해당하는 투자등록 증명서, 변경이 있는 투자등록 증명서 또는 투자등록 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관할 투자등록기관의 문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비관세구역에 대한 세무정책이 적용된 수입물품에 대한 모든 세액, 연체이자, 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기업이 그 후 이 조 제 1 항에 규정한 세관 검사 및 감독 조건을 충족하고 수출가공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세관지국이 이 항 제 c 호의 규정에 따라 검사 및 확인을 시행하도록 통보한 경우는 수출가공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세관지국이 이 조 제 1 항에 규정한 세관 검사 및 감독 조건을 충족했다는 확인문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비관세구역에 대한 세무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

5. 이 시행령이 발효하기 전에 세관당국으로부터 세관 검사 및 감독 조건에 관하여 이미 확인된 수출가공기업을 포함하여, 이 시행령이 발효하기 전이며 활동 과정 중인 투자등록 증명서, (있는 경우) 변경이 있는 투자등록 증명서 또는 투자등록 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관할 투자등록기관의 문서가 발급된 수출가공기업에 대한 세관 검사 및 감독 조건에 관한 실제 검사:

- a) 이 시행령이 발효한 날로부터 01 년 이내, 수출가공기업은 이 조 제 1 항에 규정한 세관 검사 및 감독 조건을 보완하여야 한다. 수출가공기업이 이 조 제 1 항에 규정한 세관 검사 및 감독 조건을 계속해서 보완했을 때 해당 기업은 수출가공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세관지국에 이 시행령에 첨부하여 발행한 부록 VII 호 제 25 호서식에 따른 통보를 송부한다.

b) 수출가공기업의 통보를 수령한 날로부터 근무 10 일 이내, 수출가공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세관지국은 이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세관 검사 및 감독 조건 충족 가능성에 관한 검사를 완료하여 이 조 제 1 항에 규정한 세관 검사 및 감독 조건을 충족하는지 아닌지에 대하여 이 시행령에 첨부하여 발행한 부록 VII 호 제 26 호서식에 따른 확인문서를 수출가공기업에 송부한다. 수출가공기업이 세관 검사 및 감독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확인문서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기업이 이 조 제 1 항에 규정한 세관 검사 및 감독 조건을 계속해서 보완할 수 있되 이 시행령이 발효한 날로부터 01 년이 경과해서는 안 된다.

c) 수출가공기업이 이 조 제 1 항에 규정한 세관 검사 및 감독 조건을 보완했을 때 해당 기업은 수출가공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세관지국에 이 시행령에 첨부하여 발행한 부록 VII 호 제 25 호서식에 따른 문서를 지속적으로 송부하며 수출가공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세관지국이 이 조 제 1 항에 규정한 세관 검사 및 감독 조건을 재검사하도록 요청한다. 수출가공기업의 신청문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근무 10 일 이내, 수출가공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세관지국은 세관 검사 및 감독 조건 충족 가능성에 관한 재검사를 완료하여 이 조 제 1 항에 규정한 세관 검사 및 감독 조건을 충족하는지 아닌지에 대하여 이 시행령에 첨부하여 발행한 부록 VII 호 제 26 호서식에 따른 문서를 수출가공기업에 송부할 책임이 있다.

수출가공기업이 이 조 제 1 항에 규정한 세관 검사 및 감독 조건을 여러 번 보완할 수 있되 이 시행령이 발효한 날로부터 01 년이 경과해서는 안 된다.

d) 이 시행령이 발효한 날로부터 01 년이 경과한 가운데 이 항에 규정한 수출가공기업이 이 시행령에 첨부하여 발행한 부록 VII 호 제 25 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지 않거나 이 조 제 1 항에 규정한 세관 검사 및 감독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상기 01 년을 초과한 날로부터 비관세구역에 대한 세무정책을 적용할 수 없다.

기업이 그 후 이 조 제 1 항에 규정한 세관 검사 및 감독 조건을 충족하고 수출가공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세관지국이 이 항 제 c 호의 규정에 따라 검사 및 확인을 시행하도록 통보한 경우는, 수출가공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세관지국이 이 조 제 1 항에 규정한 세관 검사 및 감독 조건을 충족했다는 확인문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비관세구역에 대한 세무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

6. 이 시행령이 발효하기 전에 세관당국으로부터 세관 검사 및 감독 조건에 관하여 이미 확인된 수출가공기업을 포함한 수출가공기업이 투자등록 증명서, (있는 경우) 변경이 있는 투자등록 증명서 또는 투자등록 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관할 투자등록기관의 문서를 이 시행령이 발효하기 전에

발급하게 되면 이 조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세관 검사 및 감독 조건을 실제 검사 수행한다.

7. 투자등록 증명서, (있는 경우) 변경이 있는 투자등록 증명서 또는 투자등록 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관할 투자등록기관의 문서가 발급된 시점부터 세관당국이 시행령 제 82/2018/ND-CP 호 30 조 1 항과 이 시행령에 기재한 규정에 따른 세관 검사 및 감독 조건을 충족했다는 확인문서를 발급한 날 이전까지 비관세구역에 대한 세무정책을 적용할 수 없는 이 조 제 5,6 항에 기재한 각종 경우는 기업이 이 조 제 1 항에 규정한 세관 검사 및 감독 조건을 충족한 후 세무관리법의 과다 납부한 세액을 처리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이 처리된다.”

11. 제 29 조 2,3,4 항은 다음과 함께 개정 및 보완된다:

“제 29 조. 최소가액 물품, 우편이나 특급택송 서비스를 통해 배송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

2. 우편이나 특급택송 서비스를 통해 배송하는 수입물품은 관세가격이 1.000.000 베트남 동 이하 또는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100.000 베트남 동 이하 되면 수입세가 면제된다.
3. 1 회 수출, 수입에 대하여 물품의 총 관세가격이 500.000 베트남 동 이하 또는 납부해야 할 총 세액이 50.000 베트남 동 이하 되면 수입세, 수출세가 면제된다.

이 항에 기재한 규정은 선물, 기증품인 물품, 국경지역 주민의 매매 교환 물품, 우편이나 특급택송 서비스를 통해 배송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4. 면세서류: 세관서류는 관세청법의 규정에 따라 실행한다.”

12. 제 29a 조는 다음과 함께 보충된다:

“제 29a 조. 국제조약에 따라 수출, 수입한 물품에 대한 면세

1. 수출물품, 수입물품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국인 국제조약에 따라 수출세, 수입세가 면제된다.
2. 수출세, 수입세가 면제되는 물품 확정을 위한 근거
 - a) 국제조약에 규정된 물품의 종류, 정량;
 - b) 국제조약이 면세 종류 및 정량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국제조약 체결제안기관 또는 가입 기관, 전문관리기관의 증명서.

국제조약 체결제안기관 또는 가입기관이 전문관리기관이 아닌 경우, 국제조약 체결제안기관 또는 가입기관의 증명서에 근거한다.

3. 국제조약이 면세품 종류 및 정량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확인 수속

- a) 면세품을 사용하는 단체, 개인은 국제조약 체결제안기관 또는 가입 기관, 전문관리기관이 이 시행령에 첨부하여 발행한 부록 VII 호 제 13 호서식에 따른 수출세, 수입세가 면제되는 물품의 종류 및 정량을 확인하도록 요청공문을 송부한다.
- b) 요청공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국제조약 체결제안기관 또는 가입 기관, 전문관리기관은 이 시행령에 첨부하여 발행한 부록 VII 호 제 14 호서식에 따른 수출세, 수입세가 면제되는 물품의 종류 및 정량에 관한 확인문서를 작성하여 해당 단체, 개인에게 송부하거나, 면세 신청한 물품이 국제조약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의 거절 문서를 발행한다.

4. 면세 리스트 통보

단체, 개인은 최초 면세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관신고서를 등록하기 전에 세관당국에 수입세, 수출세 면제 물품목록 (이하 “면세목록”라고 함)을 통보해야 한다.

a) 면세목록 통보 서류

- 이 시행령에 첨부하여 발행한 부록 VII 호 제 05 호서식에 따른 면세목록 통보 공문: 원본 01 부;
- 세관기관의 전자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송부하는 면세목록. 해당 시스템이 사고가 발생하면 단체, 개인이 이 시행령에 첨부하여 발행한 부록 VII 호 제 06 호서식에 따른 서면 면세목록의 원본 02 부와 제 07 호서식에 따른 차감표의 원본 01 부를 제출한다.

수출, 수입 시점에 수량을 차감할 수 없고 여러 번에 걸쳐 수출,수입해야 하는 기계, 장비의 경우 (이하 “조합, 라인”이라고 함), 단체, 개인은 이 시행령에 첨부하여 발행한 부록 VII 호 제 06 호서식에 따른 서면 면세목록의 원본 02 부를 제출한다.

면세목록은 국제조약이나 국제조약 체결제안기관 또는 가입 기관, 전문관리기관의 면세 종류 및 정량에 관한 확인문서와 일치하여 설정된다;

- 국제조약이 면세품의 종류 및 정량을 규정하는 경우에 대한 국제조약: 복사본 01 부;
- 이 조 제 3 항 b 호에 규정한 수출세, 수입세가 면제되는 물품의 종류 및 정량을 확인하는 문서: 복사본 01 부, 대조하기 위하여 원본을 제시한다;

b) 면세목록 통보 및 개정 장소: 면세목록을 접수하는 세관당국의 책임; 면세목록을 통보하는 단체, 개인의 책임은 이 시행령 제 30 조 4, 5,6,7 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c) 단체, 개인이 면세품을 직접 수출, 수입하지 않고 주 계약자 또는 하청계약자 또는 리스금융 회사가 물품을 수출, 수입하는 경우, 계약자, 리스금융 회사는 단체, 개인이 세관당국에 이미 통보한 면세목록을 사용할 수 있다.

5. 면세 서류 및 수속은 이 시행령 제 31 조에 기재한 규정에 따라 실행한다.”

13. 제 30 조 3 항 b,k 호, 7 항 d 호는 다음과 함께 개정 및 보충된다:

“제 30 조. 면세 리스트를 통보하는 경우에 대하여 수입예정 면세품 리스트 통보

3. 면세 리스트 통보 서류

b) 면세 리스트는 세관당국의 전자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송부한다. 해당 시스템이 사고나면 프로젝트 소유자가 이 시행령에 첨부하여 발행한 부록 VII 호 제 06 호서식에 따른 서면 면세 리스트의 원본 02 부와 제 07 호서식에 따른 차감표의 원본 01 부를 제출한다.

수입 시점에 수량을 차감하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 수입해야 하는 기계, 장비 (이하 ‘조합, 라인’이라고 함)의 경우, 프로젝트 소유자가 이 시행령에 첨부하여 발행한 부록 VII 호 제 06 호서식에 따른 서면 면세 리스트의 원본 02 부를 제출한다.

k) 수출세, 수입세법 제 16 조 11 항 a 호, 15 항 b 호, 16 항 a 호에 규정한 기계, 장비 또는 구성품, 분리 가능한 부품, 기계, 장비의 부품에 대한 조제위탁 계약서: 복사본 01 부.

이 항에 규정한 각종 증서가 전문 국가관리기관으로부터 국가 싱글윈도우 정보포털을 통하여 전자로 송보된 경우, 프로젝트 소유자가 세관당국에 면세 리스트 통보 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

7. 프로젝트 수요자의 책임:

d) 이 시행령 제 31a 호에 기재한 규정에 따라 면세된 수입물품 사용 현황을 통보한다.”

14. 제 31 조 2 항 e 호, h 호, 3 항 c 호, 5 항은 다음과 함께 개정 및 보충된다:

“제 31 조. 세관수속 수행 시 면세서류, 수속

2. 이 조 제 1 항에 규정한 서류외에도 각 경우별로 납세자가 다음의 증서를 추가로 제출한다:

e) 수출세, 수입세법 제 16 조 11 항 15 항, 16 항에 규정한 운송수단에 대한 과학기술부의 확인문서: 원본 01 부;

h) 이 시행령 제 28 조 1 항 a, b, d 호에 규정한 경우에 대한 총리의 면세결정: 본사본 01 부, 대조하기 위한 원본 제시.

3. 면세수속:

c) 전자 데이터 처리 시스템은 면세리스트내 물품수량에 상응하여 수출, 수입물품 수량을 자동으로 차감한다.

면세리스트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 관세기관은 면세리스트내 물품수량에 상응하여 수출, 수입한 물품 수량을 업데이트 및 차감 수행한다.

조합, 라인에 따라 면세품을 수입하는 경우 납세자는 기계 및 장비가 설치된 세관기관에서 세관수속을 수행해야 한다. 세관신고서 등록 시점에 납세자가 세관신고서에 물품을 세부 신고한다. 세관신고서에 물품을 세부 신고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가 전자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이 시행령에 첨부하여 발행한 부록 VIIa 호 제 04 호서식에 규정한 정보기준 또는 부록 VII 호 제 15 호서식에 따른 수입물품에 관한 세부 신고서를 작성하며 동시에 세관신고서를 첨부한다. 각 조합, 라인의 마지막 물품 수입을 완료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납세자가 면세 리스트를 통보한 세관기관에 이 시행령에 첨부하여 발행한 부록 VIIa 호 제 05 호서식에 규정한 정보기준 또는 부록 VII 호 제 16 호서식에 따라 통보할 책임을 진다.

5. 특수 경우에 대한 수입세 면제 수속

a) 납세자는 수입세, 수출세법의 제 16 조의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를 위한 고정자산을 만들기 위해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세가 면제되나 물품을 수입하지 않고 베트남에서 양도한 다른 개인, 단체로부터 수입세 면제된 물품을 수령할 수 있는 경우, 납세자는 양도를 받는 물품에 대한 신규 세관신고서를 등록해야 하며 수입세를 미포함한 양도가격 조건으로 수입세가 면제된다. 물품을 양도하는 개인, 단체는 면제된 수입세액을 반납해야 하지 않는다.

b) 수입세, 수출세법 제 16 조에 규정된 대상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위탁 수입한 또는 물품 수입에서 낙찰된 단체, 개인은 위탁 계약서에 따른 물품 공급가격이나 낙찰결정에 따른 낙찰가격이 수입세를 미포함한 조건으로 위탁 또는 낙찰 수입한 물품에 대한 수입세가 면제된다.

c) 리스금융회사는 이 시행령의 제 14 조, 제 16 조, 제 17 조, 제 19 조, 제 25 조에 규정된 대상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세를 미포함한 리스가격 조건으로 수입세가 면제된다. 금융리스 수입물품이 면세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 리스금융 회사는 신규 세관신고서를 등록해야 하며 신규 세관신고서를 등록한 시점에 납세해야 한다. 신규 세관신고서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세관기관은 규정에 따라 부과고지를 시행한다.

- d) 다른 단체, 개인에게 투자우대 대상에 속한 일부 또는 전체 프로젝트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 소유자는 프로젝트를 양도하기 전에 전자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이 시행령에 첨부하여 발행한 부록 VIIa 호 제 06 호서식 또는 부록 VII 호 제 17 호서식에 규정된 정보기준을 면세목록을 접수한 세관당국에 통보하며 프로젝트에 따른 양도물품에 대한 면세된 수입세액을 반납해야 하지 않는다. 프로젝트 양도를 받는 단체, 개인은 양도받은 물품에 대한 신규 세관신고서를 신고해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수입세가 면제된다: 양도 시점에 투자사업이 여전히 투자우대 대상이며; 물품 양도가격이 수입세 미포함; 양도를 받는 단체, 개인이 변경된 투자등록증명서 또는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문서에 기재된 양도사업의 소유자다.

양도사업의 소유자의 면세목록을 접수한 세관당국은 시스템에 실린 면세목록을 사용 중지하거나 양도사업의 소유자의 서면 면세목록 및 차감표를 회수한다; 양도사업의 소유자가 다 수입하지 않은 물품수량에 대한 면세목록을 접수한다.

전체 프로젝트를 양도하나 사업소유자가 면세목록에 따른 물품을 다 수입하지 않은 또는 일부 프로젝트를 양도하나 사업소유자가 양도사업에 속한 면세목록에 따른 물품을 다 수입하지 않은 경우, 양도 받은 단체, 개인은 양도사업에 속하며 다 수입하지 않은 물품에 대한 면세목록을 통보한다.

일부 프로젝트를 양도하나 사업소유자가 계속 구현하는 사업에 속한 면세목록에 따른 물품을 다 수입하지 않은 경우, 양도사업의 소유자는 계속 구현하는 사업에 속하며 다 수입하지 않은 물품에 대한 면세목록을 통보한다.

- d) 투자우대사업의 고정자산을 만들기 위해 수입세 면제된 수입물품은 같은 사업소유자의 다른 투자우대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투자사업 소유자가 이전한 물품에 대한 신규 세관신고서를 등록하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수입세가 면제된다: 이전된 수입물품의 가격이 수입세를 미포함; 접수한 투자우대사업의 분야 및 규모에 적합; 고정자산에 관한 규정 충족; 세관당국에 통보한 접수사업의 면세목록 안에 언급된다.

접수한 물품은 세관당국에 통보한 접수사업의 면세목록 상 차감된다. 이전사업의 소유자가 이전한 물품을 대체하기 위해 물품수량을 추가로 수입할 수 있다. 이전사업의 소유자가 이 시행령 제 30 조 5 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목록을 보충 신고한다.

- e) (제 16 조 6,7 항에 규정한 경우 제외) 수출세, 수입세법 제 16 조에 규정한 각종 경우에 속한 수입물품은 폐기해야 하며 실제로 법규에 따라 이미 폐기된 경우, 수입세가 면제된다. 폐기하는 것은 유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준수해야 하고 세관공무원으로부터 직접 감독된다. 폐기 전에 납세자가 폐기이유, 폐기할 품명, 폐기 시간 및 장소를 명시한 통지(원본 01 부); 전문관리기관 또는 자원환경국의 폐기허가서 (복사본 01 부, 대조를 위해 원본 제시)를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 납세자가 수입신고서를 등록한 세관기관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한 물품을 가지고 있는 기업 사장 또한 폐기 감독한 세관공무원 또한 사장의 위탁에 따른 폐기 실행 및 감독한 직원의 성함, 서명, 도장, 이 있어야 하는 폐기결과 확인서; (있는 경우) 유관 국가기관의 대표자의 서명(복사본 01 부, 대조를 위해 원본 제시).”

15. 제 31a 조는 다음과 함께 보충된다:

“제 31a 조. 수입세 면제된 물품 사용에 대한 통보 및 검사

1. 수입세 면제된 물품 사용에 대한 통보

a) 통보대상:

프로젝트 소유자는 전자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이 시행령에 첨부하여 발행한 부록 VIIa 호 제 07 호서식에 기재한 정보기준 또는 세관당국에 면세품 목록을 통보해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 면세품 목록을 접수하는 세관당국에 부록 제 VII 호 제 18 호서식에 따른 면세품 사용 현황을 통보할 책임을 진다.

b) 통보 시점 및 시한:

정기적으로 매년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단체, 개인은 면세품 목록을 접수하는 세관당국에 전체 프로젝트가 종료되거나 물품이 베트남에서부터 재수출되거나 물품이 면세사용, 국내소비, 폐기를 목적으로 변경될 때까지 회계연도 내의 면세품 사용 현황을 통보한다.

이 시행령 제 15 조, 23 조에 규정한 수입세 면제되는 경우에 대하여, 면세품 사용 현황을 통보하는 것은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운영된 날로부터 05 년 시한 내에 매년 시행되어야 한다. 05 년 시한이 종료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프로젝트 소유자는 05 년 시한 내에 미사용한 수입면세 원료, 물자, 구성품에 대한 신규 세관신고서를 등록하고 납세신고를 수행한다.

2. 수출세, 수입세법 제 16 조 11 항 a 호, 15 항 b 호, 16 항 a 호에 규정한 제조용 원료, 물자를 수입하는 경우, 프로젝트 소유자가 다음과 함께 실행한다:
 - a) 기계, 장비 또는 구성품, 분리 가능한 부품, 기계, 장비의 부품의 제조 완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프로젝트 소유자는 면세품 목록을 접수하는 세관당국에 전자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이 시행령에 첨부하여 발행한 부록 VIIa 호 제 08 호서식에 기재한 정보기준 또는 부록 제 VII 호 제 19 호서식에 따라 제조 완성에 대하여 통보한다. 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제조 완료일로부터 30 일 내에 프로젝트 소유자는 당시 신규 세관신고서를 등록하고 납세신고를 수행해야 한다.
 - b) 이 항에 명시한 프로젝트 소유자의 통보를 받는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면세품 목록을 접수하는 세관당국은 기계, 장비 또는 구성품, 분리 가능한 부품, 기계, 장비의 부품 제조 목적에 맞게 사용된 수입면세 물품 수량을 확정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소유자의 본사에서 검사를 시행한다. 해당 세관당국이 프로젝트 소유자가 해당 수입품을 다 사용하지 않은 또는 면세품 사용 목적을 변경했으나 신규 세관신고서를 아직 등록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면 규정에 따라 부과고지를 한다.
 - c) 프로젝트 소유자가 이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용 수입물품 사용 현황 통보를 시행한다. 제조 완료년으로부터 프로젝트 소유자가 제조한 후의 상품에 대한 사용 현황을 통보한다.
3. 세관신고서 등록 시점에 물품 수량을 차감하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 수입해야 하는 조합, 라인에 따른 면세 수입의 경우, 이 조 제 1 항의 규정외에도 프로젝트 소유자가 다음과 함께 시행한다:
 - a) 조합, 라인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프로젝트 소유자는 면세품 목록을 접수하는 세관당국에 전자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이 시행령에 첨부하여 발행한 부록 VIIa 호 제 09 호서식에 기재한 정보기준 또는 부록 제 VII 호 제 20 호서식에 따라 조합, 라인 설치를 완료함에 대하여 통보한다. 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 조합, 라인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30 일 내에 프로젝트 소유자는 당시 신규 세관신고서를 등록하고 납세신고를 수행해야 한다.
 - b) 조합, 라인 설치 완료에 관한 프로젝트 소유자의 통보를 받는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면세품 목록을 접수하는 세관당국은 면세된 조합, 라인 설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된 수입면세 물품 수량을 확정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소유자의 본사에서 검사를 시행한다. 해당 세관당국이 프로젝트 소유자가 해당 수입품을 다 사용하지 않은 또는 조합, 라인에 따른 면세품 사용 목적을 변경했으나 신규 세관신고서를 아직 등록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면 규정에 따라 부과고지를 한다.

- c) 프로젝트 소유자가 이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 라인 설치 완료하기 위하여 수입물품 사용 현황 통보를 시행한다. 조합, 라인 설치 완료년으로부터 프로젝트 소유자가 설치 완료한 후의 상품에 대한 사용 현황을 통보한다.

4. 면세품 사용에 대한 검사

- a) 면세품 목록 통보를 접수하는 세관당국은 위험관리 원칙대로 프로젝트 소유자의 본사에서 면세품 사용을 검사 시행한다.
- b) 해당 검사는 사후검사에 관한 절차, 수속에 따라 시행된다.”

16. 제 32 조 2 항, 3 항 c 호는 다음과 함께 개정- 보완된다:

“제 32 조. 수출세, 수입세의 감세

2. 감세 신청서류는 다음을 포함한다:

- a) 이 시행령에 첨부하여 발행한 부록 VIIa 호 제 3 호서식에 기재한 정보기준에 따른 세관기관의 전자데이터 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송부하는 납세자의 감세신청 공문이나 부록 VII 호 제 8 호서식에 따른 감세신청 공문: 원본 01 부;
- b) (있는 경우) 보험받는 단체의 보험계약서, 보상금 지급통보서. 보험계약서가 조세에 관한 보상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경우, 보험단체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있는 경우) 운송사가 야기하는 손실의 경우에 대한 운송사의 보전 계약서 또는 합의보고서: 복사본 01 부;
- c) 손해 발생한 곳인 지방의 직능기관의 손해 원인 확인보고서 (화재사건 발생한 곳인 지방의 화재예방 소방경찰기관의 화재사건 확인보고서; 수입원료, 기계, 설비에 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천재, 재난, 전염병, 사고에 관한 불가피한 사건이 발생한 곳인 현급 경찰기관, 인민위원회, 공업단지 관리위원회, 수출가공구역 관리위원회, 경제구역 관리위원회, 국경관문 관리위원회, 항만당국, 공항당국과 같은 유관 기관, 단체들 중 하나의 확인문서): 원본 01 부.
- d) 손실된 물품 수량 또는 물품의 실제 손실 비율에 관한 감정평가 서비스사업 상인의 감정평가 증서: 원본 01 부.

3. 감세 수속 및 관할:

c) 납세자가 세관수속을 수행한 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서류를 충분히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성 시 세관국은 서류를 작성하고 정보를 검사하며 서류의 정확성 및 충분성을 심사하고 이 시행령에 첨부하여 발행한 부록 VII 호 제 12 호서식에 따른 감세를 결정하거나 납세자에게 감세대상에 속하지 않은 이유, 납부해야 할 세액을 통보한다. 서류가 충분하지 않으면 세관기관은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 3 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통보한다.

감세 해결함에 있어서의 근거가 충분히 있기 위하여 세관감시구역을 통과한 물품을 실제 검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납세자의 본사에서 사후검사결정을 제정하고 서류를 충분히 수령한 날로부터 40 일 이내에 이 호에 규정한 각종 일을 수행한다. “

17. 제 34 조 1 항 a 호, 2 항 b 호는 다음과 함께 개정 및 보완된다:

“제 34 조. 재수출해야 할 수입품에 대한 환세

1. 수입세를 납부했으나 재수출해야 할 수입품이 수입세가 환급되고 수출세를 납부할 필요없으며, 다음을 포함한다:

a) 외국으로 재수출해야 할 수입품이며 화물주에게 반품하기 위한 수출, 외국으로 수입물품 수출, 또는 비관세구역에서 사용하기 위해 비관세구역으로 수출하는 것을 포함한다.

물품을 재수출하는 것은 최초 수입자 또는 최초 수입자로부터 수출 권한위임 받는, 위탁받은 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2. 환세 서류는 다음을 포함한다:

b) 영수증이나 상업 영수증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부가세 영수증 또는 물품판매 세금계산서: 복사본 01 부.”

18. 제 33 조 2 항 a 호, 제 34 조 2 항 a 호, 제 35 조 2 항 a 호, 제 36 조 5 항 a 호, 제 37 조 3 항은 다음과 함께 개정-보완된다:

“a) 이 시행령에 첨부하여 발행한 부록 VIIa 호 제 01 호서식에 기재한 정보기준에 따른 세관당국의 전자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송부하는 수입품이나 수출품에 대한 수입세, 수출세 환세신청서 또는 부록 VII 호 제 09 호서식에 따른 수입세, 수출세 환세신청서: 원본 01 부.”

19. 제 37a 조는 다음과 함께 보완된다:

“제 37a 조. 수출세, 수입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1.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경우

- a) 이 시행령 제 33, 34, 35, 36, 37 조의 규정에 따른 환세대상에 속하나 납세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 b) 이 시행령 제 33, 34 조의 규정에 따른 수출세, 수입세를 납부할 필요없는 물품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2.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서류

이 시행령에 첨부하여 발행한 부록 VIIa 호 제 02 호서식에 기재한 정보기준에 따른 세관당국의 전자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송부하는 수출품, 수입품에 대한 수출세, 수입세 징수하지 않는 신청서 또는 부록 VII 호 제 09a 호서식에 따른 수출세, 수입세 징수하지 않는 신청서: 원본 01 부. 이 조 제 1 항 a 호에 규정한 경우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세금 징수하지 않는 신청서외에도 환세서류와 같은 각종 서류를 제출한다.

3.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서류 제출 시점: 납세자가 물품 수출, 수입 수속을 수행할 세관기관에 세관수속 수행 시점이나 물품이 통관된 후에 세금 징수하지 않는 서류를 제출한다.

4.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서류 제출, 접수 및 처리의 수속:

- a) 이 조 1 항 a 호에 기재한 경우에 대하여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서류에 대한 제출, 접수 및 처리의 수속은 환세서류에 대한 수속과 동일하게 수행된다.

- b) 이 조 1 항 b 호에 기재한 경우에 대하여는:

물품의 최초 수출-수입신고서가 환급 신청하는 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며 납세자가 세관수속 수행 시점에 징수유예 서류를 납부한 경우, 세관당국은 수입물품이 예전에 이미 수출한 물품인 또는 수출물품이 예전에 이미 수입한 물품이라고 확인하기 위한 근거가 충분히 있으면 재수입 물품에 대해 수입세 징수하지 않는 또는 재수출 물품에 대해 수출세를 징수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다.

물품의 최초 수출-수입신고서가 환급 신청하는 세액이 발생하는 또는 물품의 최초 수출-수입신고서가 환급 신청하는 세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납세자가 물품을 통관한 후 징수유예 서류를 납부한 경우: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서류에 대한 제출, 접수 및 처리의 수속은 환세서류에 대한 수속과 동일하게 수행된다. 세관당국은 최초의 수입물품, 수출물품에 대한 환세결정과 함께 재수출 또는 재수입 물품에 대한 징수유예 결정을 내린다. 재수출 또는 재수입 물품의 납부한 세액은 조세관리법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에게 환급된다.

20. 다음의 문구 개정:

- a) 제 8 조 3 항 d 호에 기재한 “또는”자를 “또한”자로 개정;
- b) 제 11 조 2 항 b 호에 기재한 “수출품 임가공용 수입 원료, 물자, 구성품을 관리 및 사용하는 것을 결산 시 확정된다”자를 “수입품 임가공용 수출 원료, 물자, 구성품을 관리 및 사용하는 것을 결산 시 확정된다”자로 개정;
- c) 제 30 조 4 항 a 호, 6 항 a 호에 기재한 “제 2 항”자를 “제 3 항”자로 개정;
- d) 제 7 조 3 항, 제 8 조 3 항, 제 19 조 4 항, 제 20 조 3 항, 제 26 조 3 항, 제 28 조 3 항, 제 30 조 3 항, 제 31 조 2 항, 제 32 조 2 항, 제 33 조 2 항, 제 34 조 2 항, 제 35 조 2 항, 제 36 조 5 항에 기재한 “기관의 원본과 같은 사본 확인인장 날인이 있는 복사본 01 부”자를 “복사본 01 부”자로 개정;
- đ) 제 19 조 4 항 b 호에 기재한 “발전하기 위하여”자와 제 19 조 4 항 c 호에 기재한 “적용하기 위하여”자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자로 개정;
- e) 제 38 조 2 항에 기재한 “결정 제 219/2009/QĐ-TTg 호”자를 “결정 제 119/2009/QĐ-TTg 호”자로 개정.

21. 제 40 조 2 항, 5 항은 다음과 함께 개정 -보완된다:

“제 40 조. 시행 책임

- 2. 과학기술부는 수출세 수입세법 제 16 조 11,15,16 항에 규정한 수입 전용 운송수단과 수출세 수입세법 (동 조 1 항 제외) 제 16 조 21 항에 규정한 수입품에 대하여 총리의 결정에 따라 면세확인을 실행하는 또는 면세 수입품 확정을 위한 목록이나 기준을 발행한다.
- 5. 정보통신부는 정보기술 생산물, 디지털 콘텐츠, 소프트웨어의 생산활동에 직접 사용하여 수입세 면제되는 수입 원료, 물자, 구성품을 확정하는 것을 규정한다.”

제 2 조. 시행 조직

1. 이 시행령은 2021 년 04 월 25 일로부터 발효한다.

2. 이 시행령은 다음과 함께 해제, 보완, 대체한다:

a) 시행령 제 134/2016/NĐ-CP 호의 일부 내용을 다음과 함께 해제한다:

시행령 제 134/2016/NĐ-CP 호 제 8 조 3 항 c 호 제 20 조 4 항 b 호, 제 29 조 1 항;

다음의 문구: 제 20 조 3 항 a 호에 기재한 “(세관수속 수행 전에 면세 경우에 대하여) 또는 (세관수속 수행 후에 면세 경우에 대하여) 동 시행령에 첨부하여 발행된 부록 VII 호 제 03b 호서식”; 제 20 조 4 항 a 호에 기재한 “세관수속 수행 전에 면세 신청 경우”; 제 31 조 4 항에 기재한 “제 8 조 2 항”; 제 33 조 3 항, 34 조

3 항, 35 조 3 항, 36 조 6 항, 37 조 4 항에 기재한 “수출세, 수입세법 제 19 조의 규정에 따라 환세대상인데 납세하지 않은 또는 납세할 필요없는 물품의 경우 서류, 수속은 환세 서류 및 수속과 같이 수행한다”.

b) 각종 시행규칙 해제:

Aquilaria crassna 나무로부터 생산된 침향에 대한 수출세 면제를 규정한 2011/06/20 일자 시행규칙 제 90/2011/TT-BTC 호; 베트남 측의 투자지원을 받고 캄보디아에서 재배되어 국내로 수입된 미가공 농산물에 대한 수입세 면제를 규정한 2012/11/16 일자 시행규칙 제 201/2012/TT-BTC 호; 2012/11/16 일자 시행규칙 제 201/2012/TT-BTC 호를 개정-보완한 2013/06/19 일자 시행규칙 제 81/2013/TT-BTC 호; 인공사육 (Captive breeding) 에서 유래한 비단뱀에 대한 수출세 면제를 규정한 2013/08/20 일자 시행규칙 제 116/2013/TT-BTC 호.

c) 투자법 제 67/2014/QH13 호와 투자법의 일부 조항을 세부 규정하고 시행 안내하는 2015/11/12 일자 시행령 제 118/2015/NĐ-CP 호에 규정한 투자우대 실행안내에 관한 2016/06/17 일자 시행규칙 제 83/2016/TT-BTC 호 제 5 조를 해제한다.

d) 이 시행령에 첨부하여 발행한 부록 VII 호로 시행령 제 134/2016/NĐ-CP 호에 첨부하여 발행한 부록 VII 호를 대체한다.

đ) 이 시행령에 첨부하여 발행한 부록 VIIa 및 VIII 호를 보충한다.

3. 이 시행령 제 1 조 9 항에 규정한 수입세 면제 대상을 위한 수입세 우대 전환에 관한 규정:

이 시행령에 첨부하여 발행한 부록 제 VIII 호에 규정한 목록에 속한 농산물 투자 및 재배사업은 이 시행령이 발효하는 날 전에 수출세, 수입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금우대정책을 누리고 있는 경우, 관할기관에 의하여 발급된 역외투자증명서의 남은 기간 동안 이 시행령 제 1 조 9 항에 기재한 규정에 따라 수입세 면제 정책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

캄보디아가 행정 경계를 조정하기 때문에 이 시행령 제 1 조 9 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우대정책을 누리고 있는 기업의 역외투자증명서에 기재된 캄보디아의 성 이름은 더 이상 베트남과 접해있는 성이 아닌 경우, 기업이 관할기관에 의하여 발급된 역외투자증명서의 남은 기간 동안 이 시행령 제 1 조 9 항에 기재한 규정에 따라 수입세 면제 정책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

4. 내수수출품, 내수수입품에 대한 전환 규정:

이 시행령 제 1 조 1 항의 규정에 따라 내수수출품, 내수수입품에 대한 세율 적용하는 것은 수출세, 수입세법 제 107/2016/QH13 호가 발효한 날로부터 적용된다.

5. 면세 수속에 관한 전환규정:

a) 면세품 목록이 이 시행령이 발효한 날 전에 시행령 제 134/2016/NĐ-CP 호 제 29 조의 규정에 따라 총리에 의하여 이미 승인된 경우, 납세자가 승인된 면세품 목록에 기재한 물품 수량을 다 수입할 때까지 이 면세품 목록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b) 관할 기관에 의하여 이 시행령이 발효한 날 전에 발급된 면세기준 수첩은 여전히 유효한 경우, 해당 수첩에 기재한 시한이 만료되는 또는 (단체, 공관에 대하여) 정원제를 증가하거나 감축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6. 각 장관, 장관급 기관장, 정부 산하 기관장, 중앙 직할 성-시 인민위원장, 유관 단체, 개인은 이 시행령을 시행할 책임을 진다.

수신:

총리

- 당 중앙 서기위원;
- 정부총리, 각 부총리;
- 부, 장관급 기관, 정부 직속 기관;
- 중앙직할 성, 시 인민위원회, 인민의회;
- 중앙사무소와 당의 각종 위원회;
- 서기장 사무실;
- 주석 사무실;
- 민족 협의회 및 각 국회위원회;
- 국회사무실;
- 최고 인민법원;
- 최고 인민 검찰;
- 국가 감사;
- 금융 감독위원회;
- 사회정책은행;
- 베트남 개발은행;
-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 각종 단체의 중앙기관;
- 총리사무실;
- 보관: VT, KTTH .

Nguyen Xuan Phuc